제28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

목 차

○ 제28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발의의안·····2면
○ 제28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검토보고서·····82면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4. 10. 18.(금) 10:3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8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출 의안

〈 의 안 목 록 〉	〈 제 출 자 〉
1.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성 주 군 수】
2.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성 주 군 수】
3.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4. 성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성 주 군 수】
5.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성 주 군 수】
6.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7.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 주 군 수】
8. 성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9. 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4년 10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성주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경상북도

나. 출연현황

(단위 : 백만원)

조성총액 ('93 ~ '27)	기 조성액 ('93 ~ '24)	목표액 ('23 ~ '27)	'25년 출연액
4,740	4,266	790	158

※ 산정기준 : 목표액('23~'27)에 따라 매년 158백만원 출연

3.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주요내용

구 분	지원한도			상환기간		비 고
	개인	법인	기타	시설	운영	
일 반	2억원	5억원	10억원 (기업투자유치 등)	3년거치 7년 균분 상환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	연리 1.0%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만39세 이하)	5억원	10억원	-	5년거치 15년 균분 상환	3년거치 5년 균분 상환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18조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나. 기타사항 : 해당없음

관련법령 발췌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역 자유화 확대 등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7. 9. 27., 2019. 10. 31.>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농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협 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농어촌 투·융자 재원 등 국고지원금
3. 제4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기금운용수익금

③ 도지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도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025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경상북도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육 자유화 확대 등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해「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여 경상북도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기금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158백만원씩 성주군 출연 배정액으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세입	세 입	-	-	-	-	-	-
	소 계(a)	-	-	-	-	-	-
세출	출 연 금	158	158	158	158	158	790
	소 계(b)	158	158	158	158	158	790
□총 비용(a-b)		△158	△158	△158	△158	△158	△79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국비		-	-	-	-	-	-
도비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	-	-	-	-	-	-
	기금	-	-	-	-	-	-
군비		158	158	158	158	158	790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158	158	158	158	158	790

5. 작성자

- 농정과 농정기획팀장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4년 10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2025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심의·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 만전을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소상공인 특례보증

나. 출연기관 : 경북신용보증재단

다. 출 연 금 : 500,000천원

라. 출연기간 : 2025. 1. ~ 12.

3. 기대효과

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대출로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나. 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출 가능토록 보증지원으로 경영안정과 성장발판 마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

다.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붙 임 출연 계획 세부 명세서 1부. 끝.

출연계획 세부 명세서

1. 경북신용보증재단

사 업 명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대표자	김 중 권
추진기관	소 재 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임수동 92-30), 7층		
	설립연도	2000. 03. 22.		
	주요사업	○ 성주군 소재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		
주관부서		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사업비(출연금)		500,000천원		
출연근거(법적근거)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2. 최근 5년간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300,000	300,000	300,000	500,000	500,000

3. 2025년 출연 세부계획

가. 출연기관 : 경북신용보증재단

나. 출연규모 : 500,000천원

다. 출연용도 :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라. 출연필요성 :

-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금 융통 지원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① 군수는 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④ 제1항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3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0. 5.>

제5조(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으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저리로 융자 시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른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타 금융기관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6조(보증재원)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기금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구분 \ 연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세입	세 입	-	-	-	-	-	-
	소 계(a)	-	-	-	-	-	-
세출	출 연 금	5	5	5	5	5	25
	소 계(b)	5	5	5	5	5	25
□ 총 비용(a-b)		△5	△5	△5	△5	△5	△25

4. 재원조달방안

(단위 : 억원)

구분 \ 연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국비		-	-	-	-	-	-
도비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	-	-	-	-	-	-
	기금	-	-	-	-	-	-
군비		5	5	5	5	5	25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5	5	5	5	5	25

5. 작성자

- 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4년 10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건축법 개정사항의 반영 및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건축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 조항 신설(안 제21조)

- 건축법에서 위임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 조항 신설

나.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 및 업무범위 정비(안 제22조제1항) : 용어의 단순화 및 명확화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을 포함한다)
-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을 포함한다)
-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을 포함한다)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 그 밖에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

다.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근거 정비(안 제22조제2항)

: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중” → “경상북도지사가 작성・관리하는 업무대행건축사 등록명부에서”로 정비

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청구방식 정비(안 제23조)

: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사회 회장이 일괄하여 대행수수료를 허가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

마.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조항 삭제(안 제25조의2)

: 건축법 개정사항 반영 →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른 건축법상 건축물의 유지·관리 조항 삭제

바.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항 삭제(안 제25조의3)

: 건축법 개정사항 반영 →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른 건축법상 건축물의 유지·관리 조항 삭제

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정비(안 제33조)

: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 “9미터” → “10미터”로 완화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건축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평가분석 : 해당없음 [가족지원과-23227(2024. 5. 9.)호]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기획예산실-5561(2024. 5. 13.)호]

마. 입법예고 : 2024. 6. 10. ~ 7. 1.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을 “따라”로, “대행하게”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로, “업무는 다음과”를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자 중”을 “경상북도지사가 작성·관리하는 업무대행건축사 등록명부에서”로 한다.

1.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을 포함한다)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을 포함한다)

3. 법 제20조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

제2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사회 회장이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9미터”를 각각 “10미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가설건축물) ①·② (생 략)	제21조(가설건축물)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7조 제1항 및 영 제20조 제1항에 따라「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 따라 ---------- ---------- ---------- ---------- ---------- -------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1.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을 포함한다)
2. 법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건축신고, 용도변경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다만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을 포함한다)
3.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가설건	3. 법 제20조에 따른 허가대상 가

축물의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설건축물(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을 포함한다)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신 설>	5. 그 밖에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
②영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 제4호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자 중 허가권자가 지정한 자로 한다.	2. ---------- 경상북도지사가 작성·관리하는 업무대행건축사 등록명부에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① (생 략)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수수료의 지급은 업무대행자가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을 완료한 분기의 다음달	② ----------

15일까지 별지5 서식에 의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 --------. 단,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사회 회장이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영 제23조의2제1항3호 규정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25조의3(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법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인 단독	<삭 제>

주택으로 한다. ②법 제35조의2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영 제23조의8제2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건축물의 일반적인 기술지원 및 행정사항 안내 등으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센터의 장은 건축물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2. 구성원은 건축관련 부서 공무원과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사 등 건축관련 전문가로 하며, 센터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⑤제3항에 따라 센터 업무 수행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61조 제1항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및 영 제86조 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 ---------- ---------- ---------- ---------- ---------- ----------.
1. 삭 제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 10미터 ---------- ----------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3. --- 10미터---------- ----------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35조 삭제 <2019. 4. 30.>

제35조의2 삭제 <2019. 4. 30.>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4., 2014. 11. 11., 2021. 11. 2.>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 시·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이 조에서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 1. 8.>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1. 1. 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1. 8.>

[전문개정 2008. 10. 29.]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3. 9. 1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라. 작성자

허가과 건축허가팀장

성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4년 10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빈집 및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등이 포함된 빈집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다.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빈집 정비 지원대상 범위와 지원 근거 규정 마련

라.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정비를 끝낸 빈집을 공공이용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농어촌정비법」

나. 예산관련사항 :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평가분석 : 해당없음[가족지원과-24875(2024. 5. 22.)]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기획예산실-5834(2024. 5. 22.)]

마. 입법예고 : 2024. 6. 12. ~ 7. 3. [허가과-28139(2024. 6. 12.)]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수선)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 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5조(빈집정비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2. 빈집을 주거 등의 공익목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량(수선)하거나 빈집철거 후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 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빈집의 활용) ① 제5조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귀농·귀촌 예정자들의 영농 및 농촌생활 체험을 위한 단기 임대주택

3.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입주자 선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 입주 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 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발췌

◈ 농어촌정비법(안 제2조 관련)

제2조(정의) 1.~11. 생략

12.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 농어촌정비법(안 제4조 관련)

제6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빈집정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⑤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13.> [전문개정 2020. 2. 11.]

제65조의2(빈집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 등 빈집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11.]

관련법령 발췌

◈ 농어촌정비법(안 제5조 및 제6조 관련)

제65조의6(빈집의 매입 및 활용) 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매입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1. 생활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2.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

② 시·도지사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내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가 빈집을 임차하여 내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해당 빈집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③ 빈집의 매입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28.>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매입한 빈집의 활용 및 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 3. 28.>

[본조신설 2020. 2. 11.] [제목개정 2023. 3. 28.]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안 제5조 및 제6조 관련)

제61조의3(빈집의 매입) ① 법 제6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어촌어항공단
3. 지방공사

② 법 제65조의6제1항에 따른 빈집의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빈집의 매입 가격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빈집의 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빈집의 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빈집의 매입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8. 11.]

성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라. 작성자

허가과 건축관리팀장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4년 10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성주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나.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1조 및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다. 출 연 금 : 5,748천원(전년 대비 △3.72%, 222천원 감소)

라. 출연금 산정기준

- 전전연도(2023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 2023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 47,903,438천원

(단위 : 천원)

'23년 결산 지방세	'23년 결산 보통세			'24년 정산액	'25년 연구원 출연금
	합계	현년도	과년도		
47,903,440	47,903,438	47,278,757	624,681	-	5,748

마. 출연목적

- 지방자치단체는「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같은 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하여야 함.

바. 출연시기 및 방법 : '25. 3월 중 현금 출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등

나. 최근 5년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출연금	25,842	4,333	3,961	5,966	5,612	5,970

다. 출연기관 현황 : 붙임

관련법령 발췌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전년도의 인건비 예산 및 집행 현황
5.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6.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7. 기본재산 및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8.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2023. 12. 29.>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출연 기관 현황

<table>
<tr><td>설립근거</td><td colspan="3">법 률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td><td>전화번호 :
02-2071-2726
홈페이지 :
www.kilf.re.kr</td></tr>
<tr><td>주요연혁</td><td colspan="2">-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td><td>기관형태
(출자, 출연)</td><td>- 출연</td></tr>
<tr><td>인원현황
(2024년 7월
현원기준)</td><td colspan="4">○ 정원 88명 / 현원 71명 * 육아휴직 7명 포함
<table>
<tr><th>구 분</th><th>계</th><th>원 장</th><th>관리직</th><th>연구직</th><th>전문직</th><th>사무직 등</th></tr>
<tr><td>정 원</td><td>88명</td><td>1명</td><td>3명</td><td>56명</td><td>5명</td><td>23명</td></tr>
<tr><td>현 원</td><td>71명</td><td>1명</td><td>3명</td><td>40명</td><td>4명</td><td>23명</td></tr>
<tr><td>총인원</td><td>97명</td><td colspan="5">정원외 인원 26명 (파견공무원13, 위촉연구・전문원8, 행정원등5)</td></tr>
</table>
※ 연구직(40명) : 연구위원직 20명, 연구원직 12명, 조사분석직 8명</td></tr>
<tr><td>임 원
(2024년 7월
현원기준)</td><td colspan="4">
<table>
<tr><th>직 책
(직책명)</th><th>성 명</th><th>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th><th>비 고</th></tr>
<tr><td>이 사 장</td><td>정 종 섭</td><td>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td><td></td></tr>
<tr><td>부이사장</td><td>박 우 량</td><td>전라남도 신안군수</td><td></td></tr>
<tr><td>이 사</td><td>강 성 조</td><td>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td><td></td></tr>
<tr><td>이 사</td><td>김 성 기</td><td>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td><td></td></tr>
<tr><td>이 사</td><td>김 진 만</td><td>서울특별시 재무국장</td><td></td></tr>
<tr><td>이 사</td><td>이 상 호</td><td>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국장</td><td></td></tr>
<tr><td>이 사</td><td>김 종 필</td><td>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td><td></td></tr>
<tr><td>이 사</td><td>최 명 동</td><td>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td><td></td></tr>
<tr><td>이 사</td><td>류 규 하</td><td>대구광역시 중구청장</td><td></td></tr>
<tr><td>이 사</td><td>서 동 욱</td><td>울산광역시 남구청장</td><td></td></tr>
<tr><td>이 사</td><td>이 남 철</td><td>경상북도 고령군수</td><td></td></tr>
<tr><td>이 사</td><td>박 관 규</td><td>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td><td></td></tr>
<tr><td>감 사</td><td>이 화 진</td><td>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td><td></td></tr>
<tr><td>감 사</td><td>김 경 태</td><td>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td><td></td></tr>
</table>
</td></tr>
<tr><td>주요기능</td><td colspan="4">-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td></tr>
<tr><td colspan="2">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td><td colspan="2">1
(직전연도말 기준)</td><td>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td><td>127,411
(‘11~’ 24 까지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금액)</td></tr>
<tr><td rowspan="3">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td><td>연도</td><td>2021</td><td>2022</td><td>2023</td><td rowspan="3">재무현황
(백만원)
‘23.12.31기준</td><td>자산</td><td>25,335</td></tr>
<tr><td>예산액</td><td>12,805</td><td>18,069</td><td>17,379</td><td>부채</td><td>1,587</td></tr>
<tr><td>지자체
지원액</td><td>10,422</td><td>13,797</td><td>12,383</td><td>자본</td><td>23,748</td></tr>
<tr><td rowspan="2">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3.12.31기준</td><td colspan="3">총수익</td><td>총비용</td><td colspan="2">당기순이익</td></tr>
<tr><td colspan="3">17,064</td><td>15,850</td><td colspan="2">1,593</td></tr>
</table>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성주군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47,903,438천원)의 1만분의 1.2 출연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따른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재무과 부과팀장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4년 10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되는 주민등록등본 등 45종 민원증명의 수수료를 감면하여 민원증명 간 수수료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받는 민원증명의 수수료 감면사항 규정 (제7조제2항 신설)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감면 제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가족지원과-22806(2024.5.7.)]

2) 규 제 심 사 : 규제심사 대상아님[기획예산실-5293(2024.5.3.)]

3) 입 법 예 고 : 2024. 6. 11. ~ 7. 2.(21일간)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한다. 단,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생 략)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한다. 단,「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관련법령 발췌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무인민원발급창구 민원증명 중 주민등록 등본 등 45종 수수료의 면제에 따른 세외수입 수수료 감소 (안 제7조제2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예상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재무과 통합징수팀장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4년 10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 근거

가.「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다.「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2. 주요 사업

가. 수륜면 백운리 일반재산 처분(변경)

1) 목적

- ㈜가야호텔에 대부중인 군소유 일반재산과 ㈜가야호텔 소유 토지와 상호교환 하고자 함.

2) 용도 : 수륜면 백운리 1282-27(일반재산)과 수륜면 백운리 산59-1 상호교환하여 연접한 군유재산을 집단화하여 향후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함

3) 기간 : 2024. 10. ~ 2024. 12.

4) 규모

- 취득 : 수륜면 백운리 산 59-1 임야 6,481㎡
- 처분 : 수륜면 백운리 1282-27 대지 4,451㎡

5) 기준가격명세

(단위 : ㎡, 원)

구 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기준가격	재산관리관	비고
소계							
토지	수륜면 백운리	1282-27	대지	4,451	565,277,000	재무과	
토지	수륜면 백운리	산59-1	임야	6,481	230,723,600	㈜가야호텔	

6) 처분방법

- 상호교환

※ 교환차액은 금전으로 지급(공유재산법 제39조 제3항)

7) 조건부 가결

- 2024년 제7회 성주군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감정평가 결과, 차액이 높은 쪽 가격의 25% 이내일 때 교환을 시행한다는 조건부 가결을 받음.

2024년도 관리계획총괄표(제4차 수시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반기			하반기			합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부지				1	6,481		1	6,481		
	1. 매입	부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부지				1	6,481		1	6,481		
	3. 기타 취득	부지 건물 기타										
처분	계	부지 건물 기타				1	4,451		1	4,451		
	4. 매각	부지 건물 기타										
	5. 양여	부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부지				1	4,451		1	4,451		
사용 및 대부허가		계 부지 건물 기타										

2024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제4차 수시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해	당	없	음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2024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제3차 수시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매각대상수량	과표또는평가액	매각시기	매각사유	매수희망자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일단의수량						
			해	당	없	음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부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 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024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제4차 수시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교환대상 수량	추 정 가 액	교 환 시 기	교 환 사 유	교환 대상자
		구분	지목	소재지	일단의 수량					
1		처분	대지	수륜면 백운리 1 282-27	4,451	4,451	544,182	10~1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제1항제2호	㈜가야호텔
2		취득	임야	수륜면 백운리 산59-1	6,481	6,481	419,182			
계	부지	처분	대지	수륜면 백운리 1 282-27	4,451	4,451	544,182	10~1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제1항제2호	㈜가야호텔
		취득	임야	수륜면 백운리 산59-1	6,481	6,481	419,18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9조제1항제2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2024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제4차 수시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양여 대상 수량	과 표 또는 평가액	양여 시기	양여 사유 및 근거 법령	양수자	비고
	지목	소재지	일단의 수 량						
			해	당	없	음			
계	부지 건물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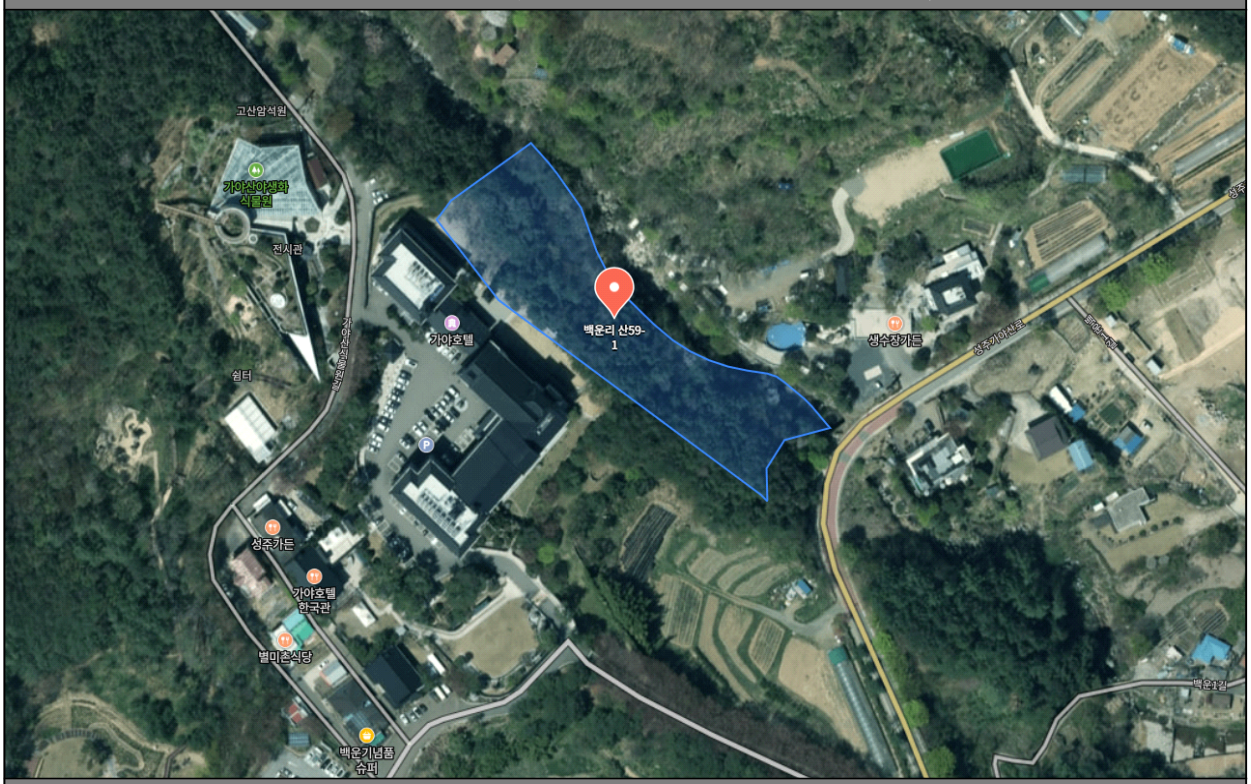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수륜면 백운리 일반재산 처분(변경)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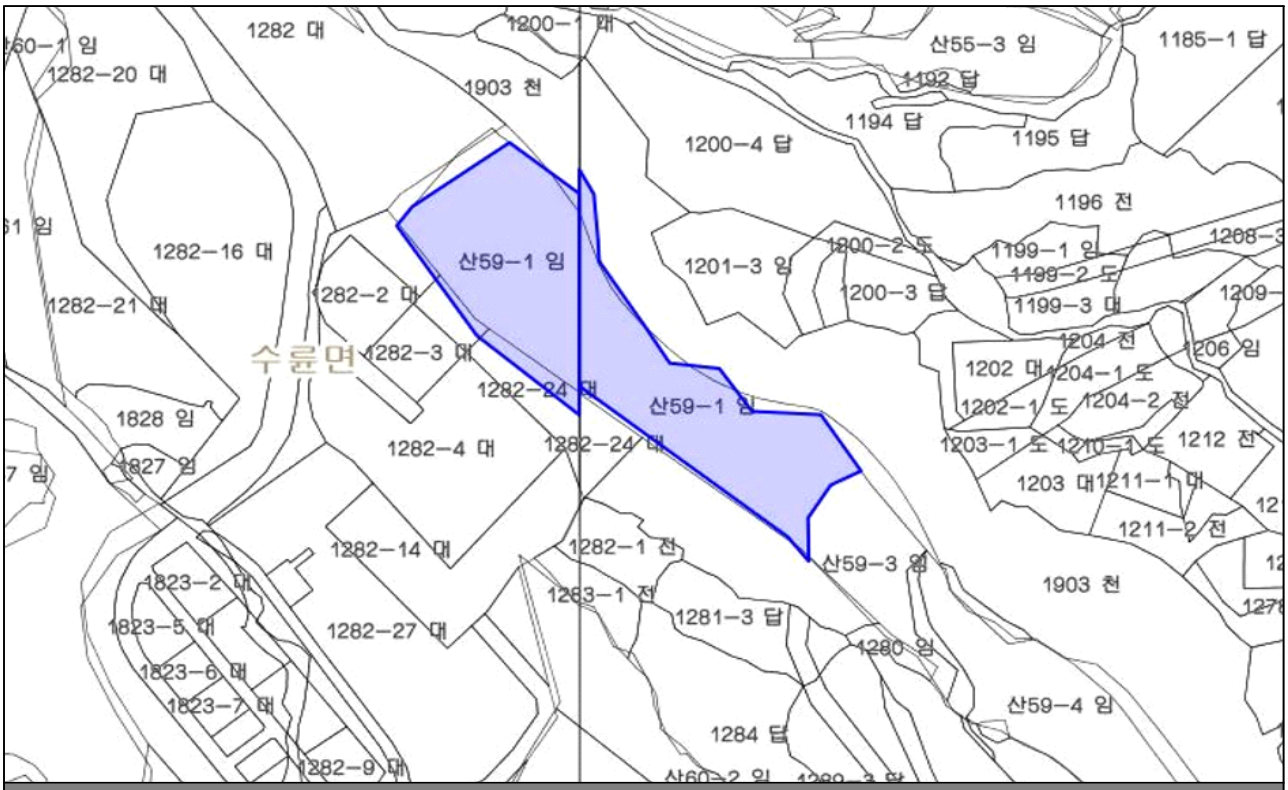


현 장 사 진(수륜면 백운리 산 5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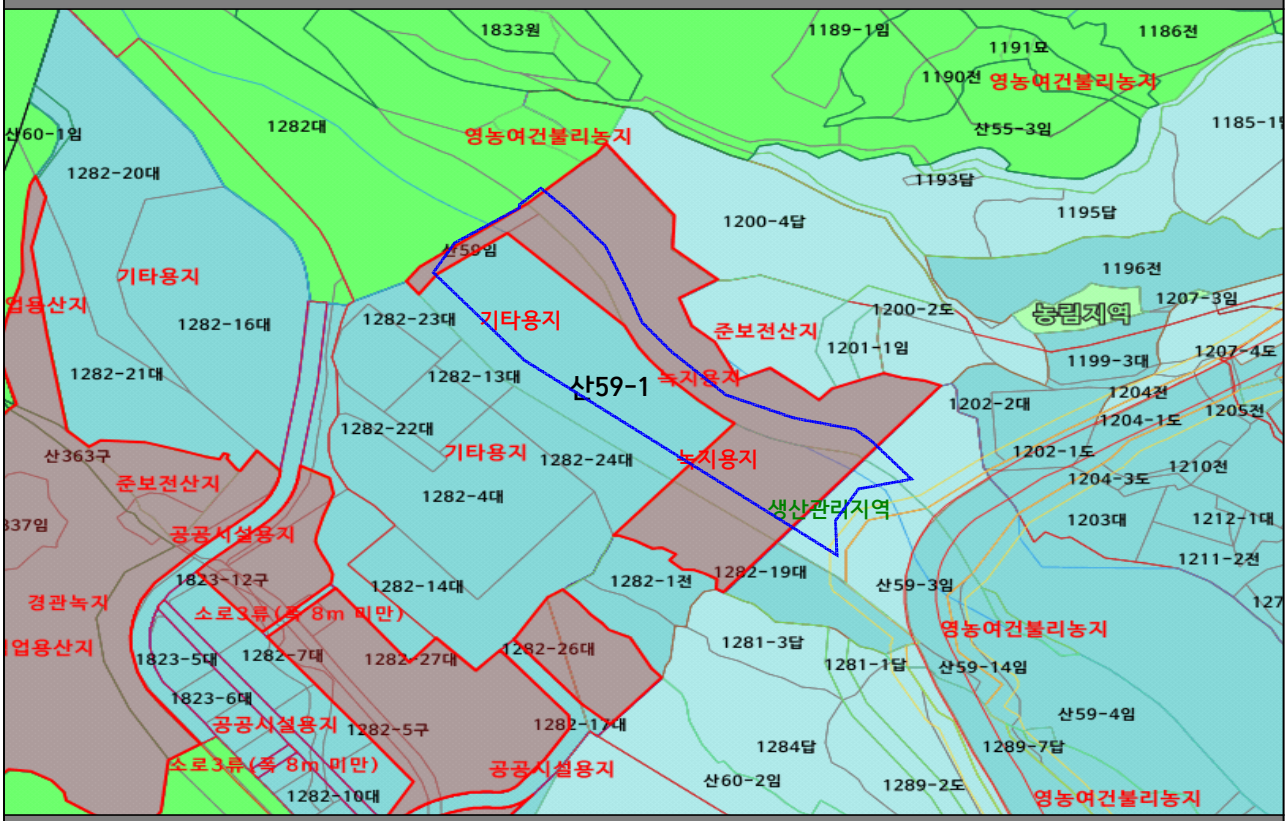


위 치 도(수륜면 백운리 산 59-1)

수륜면 백운리 일반재산 처분(변경) 참고자료



지 적 도(수륜면 백운리 산 5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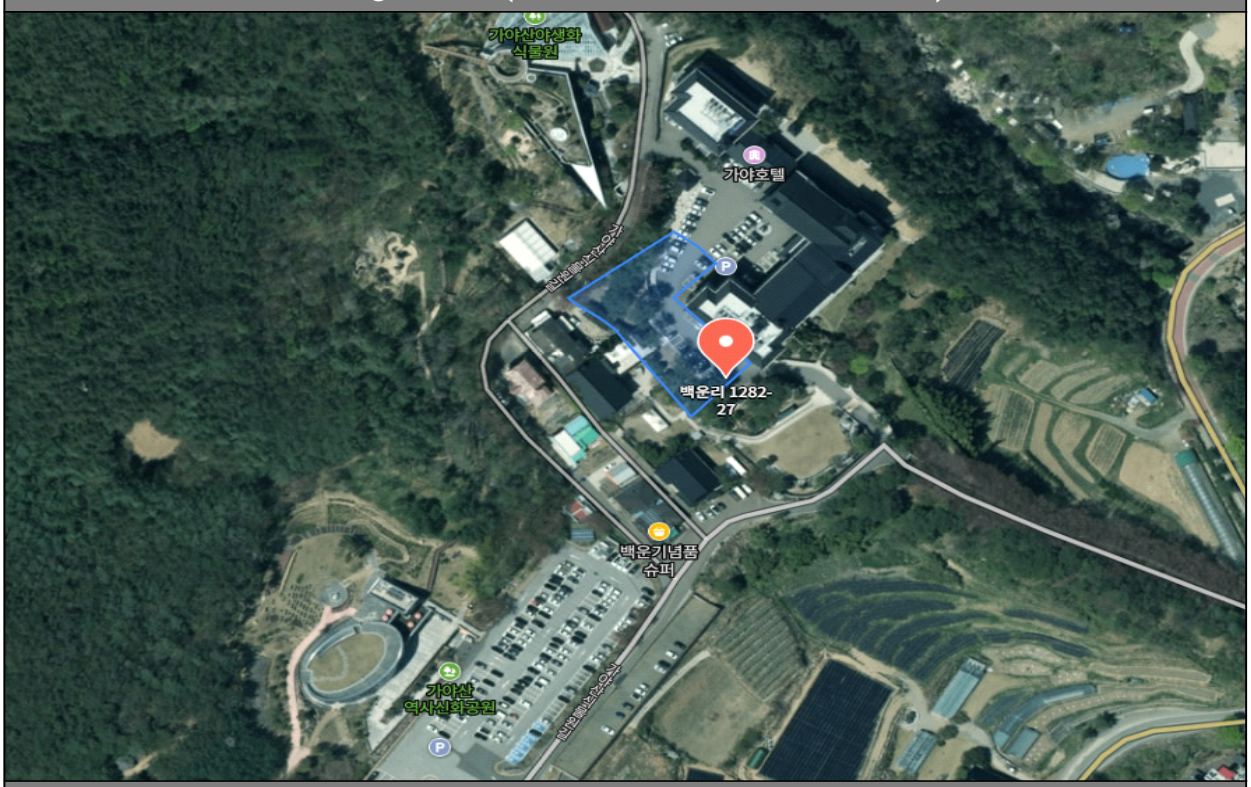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수륜면 백운리 산 59-1)

수륜면 백운리 일반재산 처분(변경)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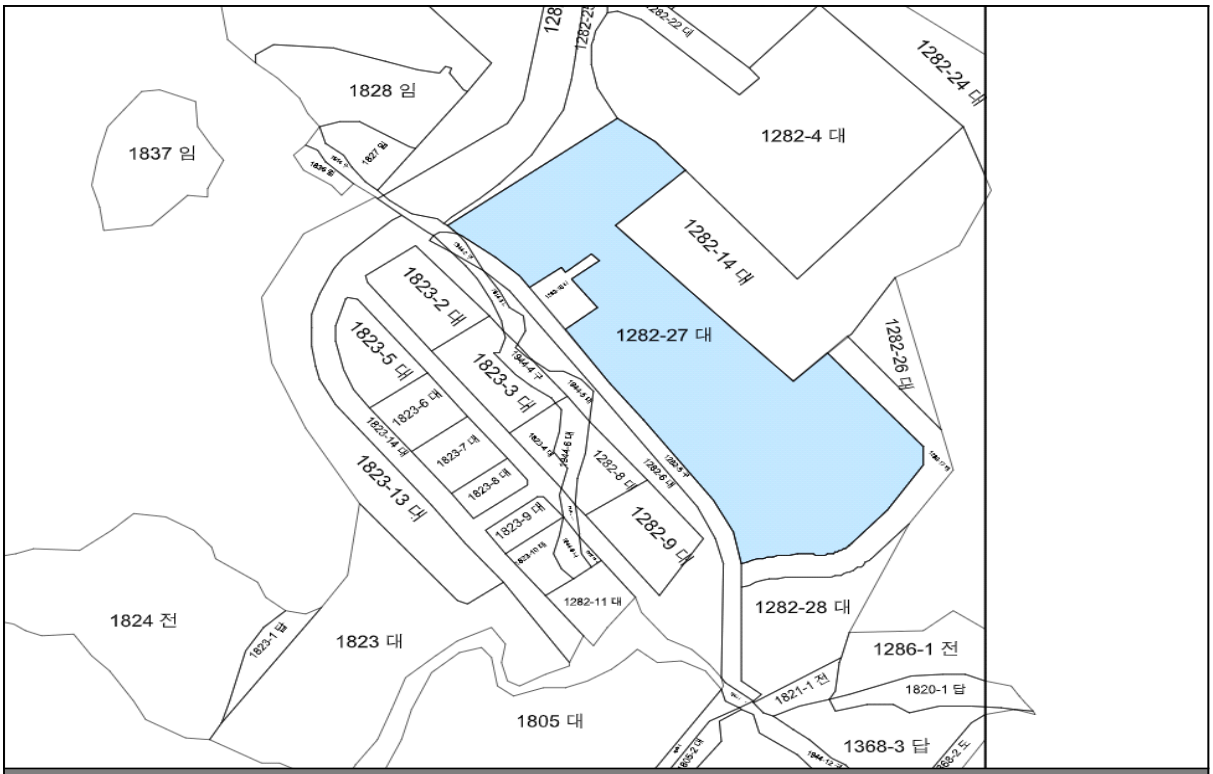


현 장 사 진(수륜면 백운리 128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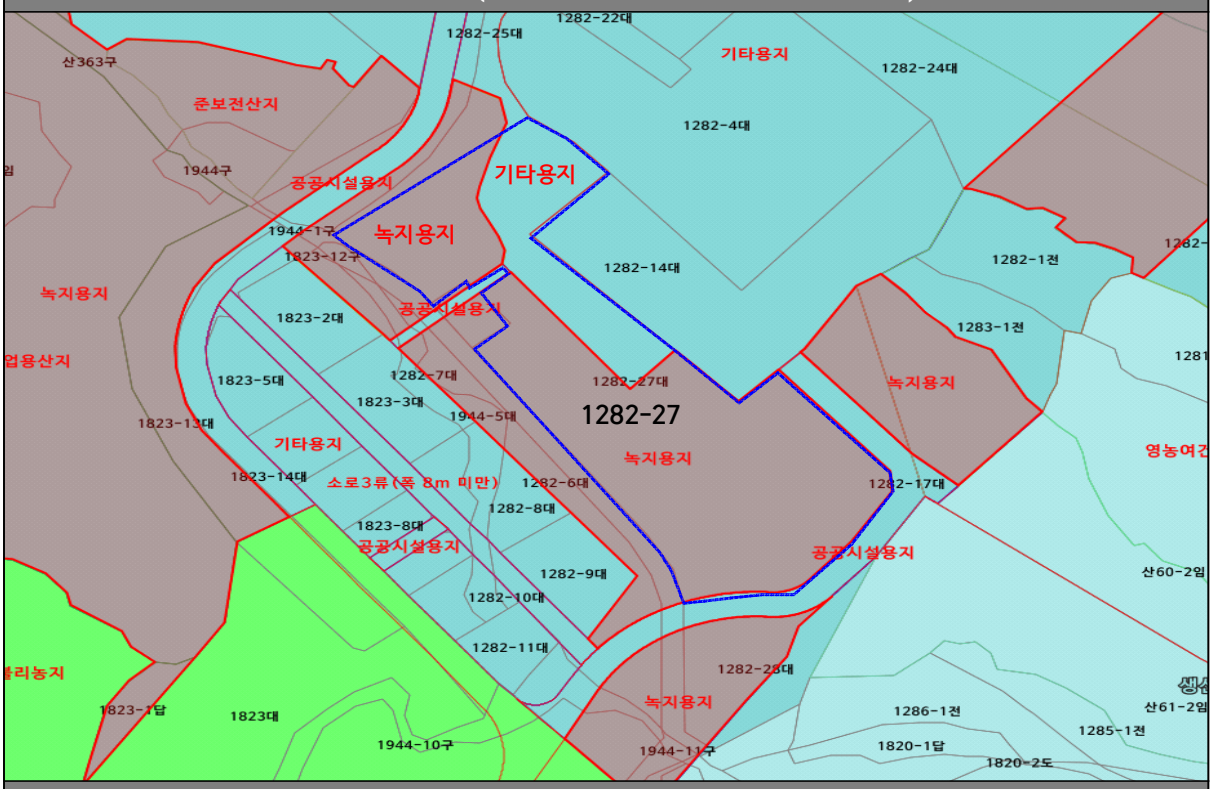


위 치 도(수륜면 백운리 1282-27)

수륜면 백운리 일반재산 처분(변경) 참고자료



지 적 도(수륜면 백운리 1282-27)



토지이용계획도(수륜면 백운리 1282-27)

성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4년 10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제정('23. 4. 27. 시행)에 따라 상위법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자율방범활동 경비지원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자율방범활동 지도 및 감독,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9346(2024.8.8.)]

2) 성별영향평가분석 : 해당없음[가족지원과-37806(2024.8.6.)]

3) 입법예고 : 2024. 9. 2. ~ 9. 22.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성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주군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주군 내 자율방범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성주군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복장·장비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자율방범대원 활동·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홍보비

5. 자율방범대 한마음다짐대회 및 선진지 견학 등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한 경우

④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산의 편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경상북도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할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년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 「성주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상북도경찰청, 성주경찰서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성주군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 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주군 내 자율 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각 읍·면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2조(책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주군 내 자율방범 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	제3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성주군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2. 청소년 선도 및 미아·가출인 보호 활동 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4. 군 및 읍·면 행사 시 교통정리 등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 5.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6. 그 밖에 군민 보호를 위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복장·장비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자율방범대원 활동·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홍보비 5. 자율방범대 한마음다짐대회 및 선진지 견학 등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신 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한 경우
<신 설>	④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산의 편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경상북도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조직 및 구성·운영)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경상북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제4조와 제5조에 따른다.	<삭 제>
제5조(지원 등) ①군수는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방범용 순찰차량의 유지 관리비 (보험료, 유류비 등)	<삭 제>

3. 자율방범활동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자율방범대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실종자(자살의심자) 수색을 위한 긴급출동 수당 5. 그밖에 방범초소 환경개선 등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관할 파출소(치안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범대로서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방범대와 연합대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한 경우	
제8조 (생 략) <신 설>	제7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 등의 원

	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상북도경찰청, 성주경찰서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 및 감독) ① ---- 제3조제1항----------.
② 군수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할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② ---- 제3조제1항---------- 다음 연도 ----------.
제7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성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5조(포상) ----------「성주군포상조례」----------.

관련법령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2조(중앙회·연합회·연합대 설립 등)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군·구에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성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4. 작성자

안전과 안전관리팀장

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4년 10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현행법상의 "향토"라는 용어는 고향땅 또는 시골이라는 의미로서, 변화한 시대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며 현대 예비군의 위상이나 임무를 고려할 때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16. 11. 30. "향토"라는 표현을 삭제하도록 하여 법 제명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예비군법"으로, "향토예비군"이 "예비군"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의 조항 및 용어를 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및 인용된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제4조, 제5조)

나. 지역책임군부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명칭 변경(안 제3조 및 제6조)

다. 조직개편반영(안 제7조)

라. 오탈자 수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24. 7. 19. ~ 2024. 8. 9.

2)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6564(2024.6.7.)호]

3)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가족지원과-27324(2024.6.5.)호]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구성”을 “구성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이내 로”를 “이내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작전장교”를 “통합방위작전장교”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요소를통합운용하며”를 “요소를 통합운용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향토방위”를 “지역방위”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를 “예비군”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부대 통합방위작전장교 또는 동원과장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인이내외”를 “20인 이내의”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가. (생 략)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다.·라. (생 략)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가. (생 략) 나. 통합방위작전등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5. (생 략)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 - 각 호 ----------.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예비군---------- ---------- ---------- ---------- 다.·라. (현행과 같음) 3.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구성원-- ---------- ---------- 4.·5. (현행과 같음)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 이내 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이내로 ---------- ---------- ----------

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 각 호---------- ---------- ----------.
1. 작전담당 간사 : 지역책임 군부대 작전장교, 경찰서 경비업무 담당과장	1. ---------- 통합방위작전장교----------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임무) ①협의회 의장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임무) ①---------- ----- 각 호-----.
1. 전·평시 통합방위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 요소를통합운용하며, 지역단위	1. ---------- ---------- -- 요소를 통합운용하며------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각 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각 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예비군담당간사	2. ----------
가. 향토방위 훈련과 예비군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	가. 지역방위 ---------- ----------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5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통합·운영) ----------각 호----------.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주군방위협의회	1. 예비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실무위원회)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성주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실무위원회는 부군수를 의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통합방위업무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②----------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군부대 작전 또는 동원장교	2. 군부대 통합방위작전장교 또는 동원과장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	제7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야별 지원반을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면 통합방위지원본 부의 본부장은 읍·면장이 되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 ---------- ---------- 각 호----------.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종합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20인이내외 반원으로 구성하되, 군통합방위지원본부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읍·면 통합방위지원 본부의 상황실장은 부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20인 이내의 ---------- ---------- 기획예산실장----------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예비군법

부 칙

제2조 [다른법률의 개정]

⑨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예비군법」 제1조에 따른 예비군

제7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통합방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6. 5. 29., 2017. 7. 26., 2020. 12. 22., 2024. 1. 16.>

1.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방위요소”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방위전력(防衛戰力) 또는 그 지원 요소를 말한다.

가.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

나. 경찰청·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기구

다.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

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 「예비군법」 제3조에 따른 예비군

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라. 작성자

안전과 안전관리팀장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제28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2024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성 주 군 의 회

2024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 군정 주요사업장 및 민원 현장 등을 방문하여 의정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점 등 개선할 사항에 대해 건의와 대안 제시

방문개요

○ 회 기 : 제28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 일 정 : 2024. 10. 10.(목) ~ 10. 17.(목) [기간 중 6일간]

○ 장 소 : 성주읍성 외 12개소

○ 참 석 : 20명(의원 8,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집행부 간부 등)

총 평

○ 군정 주요사업장 13개소에서 사업장별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 결과 어려운 군 재정 여건에도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현안 사업들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보완 및 개선 사항 등이 도출되었음.

○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경우 난개발로 인해 보완이 요구되는 몇몇 사항이 제시되었으므로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성주호 관광지 조성 등 대형사업의 경우 민간투자 유치가 이루어져야만 성공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 확보 방안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사업장별 방문결과

10. 10.(목) [1일차]

사업장명	내 용	소관부서
가야산 탐방로 (법전리 구간) 주차장 예정지	○ 부지 매입비 5억원이 투입되고, 그 외 기반시설은 전액 국비로 조성되므로 부지를 확보해주는 것이 적절하며, 다만 전체 부지에서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3분의 1 정도이므로 당장 필요한 부지만 매입할 것인지 또는 미래 확장성 및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 부지를 매입할 것인지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계획 수립 후 추진해 주기 바람. ○ 주차장에서 탐방로 입구까지의 소요 시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립공원공단과 협의하여 법전리 구간의 접근성을 높여 많은 등산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약수 등을 음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 활용방안도 검토해 볼 것.	**환 경 과**
일반재산 교환 예정지 수륜면 백운리 1282-27(매각) 산59-1(취득)	○ 매각 대상 부지(백운리 1282-27)는 군 세수에 기여하고 있고, 가치 있게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매각 방식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으나 교환의 방식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이 성주군에 보다 유익하다고 판단되므로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재 무 과**
법인수목장림 관련 민원 현장	○ 지역 내 매장시설의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필요한 시점이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지역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할 것.	**가족지원과**

10. 11.(금) [2일차]

사업장명	내 용	소관부서
성주군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 현 부지는 성주읍 중심지로 교통량이 많고 주차 문제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임대주택이 위치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점은 있으나 주차시설 확보, 건립 목적 및 분양 대상에 적합한 세대평형 등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기 바람.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2단계 (별의별 문화마당)	○ 전반적으로 지하 배수 문제 등 건립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지상에 위치한 문화마당의 경우 군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편의시설(벤치, 그늘막, 급수시설 등)을 보완하고, 각종 소규모 행사(버스킹 공연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면 무대와 객석을 구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향후 지하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상 문화마당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미리 강구할 것. ○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인근 농협 부지에 대해 정지 작업을 하는 등 주변 환경 개선에도 신경 쓸 것. ○ 별의별 문화마당의 용도를 공원으로 변경할 계획이라면 관내 활용이 저조한 공원과 주거지의 비율을 조정하여 군 도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주기 바람.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2단계 (어울림복합타운)	○ 어울림복합타운 내 도서관 내부에 하울링 현상이 나타나므로 조치할 것. ○ 어울림복합타운 내 CCTV 통합관제센터 근로자 1명당 200~300여개의 CCTV를 감시함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의견 청취 후 근로 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환기, 개별 조명, 모니터 보호 필름, 탈의실 등)이 있다면 조치할 것.	**도시계획과** **(안 전 과)**

10. 14.(월) [3일차]

사업장명	내 용	소관부서
별고을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시 1차 용역 시행 후 전체 부지로 설계변경하여 추진한 것은 분리 발주, 1차 용역비 과다 편성, 용역사 선정과정, 편입부지 보상 적용 근거 등 의구심을 들게 하므로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것. ○ 관내 체육시설을 종합하는 타운으로 조성하고자 했던 당초 목적에서 여러 시설이 제외되면서 축소되었고 결과적으로 종합체육시설이라기보다 파크골프장 중심의 시설이 된 것은 아쉽지만 문화재 발굴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바람. ○ 조성 시 발생하는 질 좋은 사토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체육시설 사 업 소
낙동강변 성주파크골프장 조성사업	○ 준공 후 유료화 운영 시 지역 경제 활성화 계획을 (입장료 일부를 성주사랑상품권으로 환급 등) 반드시 수립해서 추진할 것. ○ 군 직영으로 유지·관리하기에는 관내 파크골프장이 많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지역 내 면회에 위탁하는 등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 ○ 잔디 생육을 위해 배수 관리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홀 컵 주변에는 인조 잔디를 식재하면 유지관리가 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홀 내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 휴식공간(그늘 등)과 홀 간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하천부지 내 구조물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아는데 야간조명이나 편의시설(식수대, 화장실 등)은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대책을 강구할 것. ○ 관련 법령에 따라 부설 주차장은 시설면적에 따라 설치하면 준공이 가능하지만 본 파크골프장의 이용객을 예상하면 주차장이 부족하므로, 시설 내 주차장 조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것. 이처럼 법령상, 시설면적이 적어 주차대수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이용객이 많은 파크골프장 등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준공 가능토록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체육시설 사 업 소

10. 15.(화) [4일차]

사업장명	내 용	소관부서
월항파크골프장 조성사업	○ 편입부지(월항면 보암리 913-10)는 농업진흥구역으로 토지이용행위 제한이 많은데 주차장 등 시설 설치가 적합한지 또한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편입부지 보상을 하면서 토지보상법을 적용했으나 파크골프장 조성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지 관련 법령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합법적으로 추진하고, 하천구역선 변경의 주된 이유가 재해 예방이라면 하천 내가 아니라 바깥쪽으로 보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서 사전에 주차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 ○ 수요에 비해 규모가 작고, 위치도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기 투자액을 감내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전면민과 월항면민을 동시에 수용 가능한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건의함.	**체육시설 사 업 소**
인촌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 일반적으로 생태공원은 활용도가 낮은 편이므로 선석사, 세종대왕자태실 등 주변 관광자원을 이용한 스토리텔링 등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촌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내 수변공원에 수익성을 낼 수 있는 휴게시설(커피숍 등) 설치 등 수익 창출 방안도 고심해야 할 부분임. ○ 공공기관 위탁의 경우도 의회 보고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산책로 테크 일부에 설치된 밧줄은 안전장치로써는 적합하지 않고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어 강도가 약해지고 사용에 불편함을 초래하므로 조치할 것. ○ 사업의 상세 내용을 해당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할 것. (둘레길 규모와 위치, 전망대 설치 불가 사유 등) ○ 조성 중이지만 지금도 인촌지 주변으로 색소폰 연주 등으로 소음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생태공원 입구로부터 떨어진 곳에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체계적으로 설치하면 활동 무대가 부족했던 예술가들에게는 공연 기회가 늘어나고 관광객 및 군민들에게 일상의 흥미를 더해줄 것으로 판단됨.	**환 경 과**

10. 16.(수) [5일차]

사업장명	내 용	소관부서
심산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 연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비 확보가 관건인 바 민간투자 유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 ○ 1단계 사업의 경우 건축물 외관이 투자금액 대비 다소 아쉽고, 향후 유지 관리 비용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운영 방안을 내실 있게 계획하여 특색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2단계 사업인 집합숙박시설의 경우 위치상 조망권이 특출나지 않은데다 주변 관광자원도 부족한 실정으로 우선 주 이용대상을 특화한 후 세부 시설을 구성하여 불필요한 예산 투입을 미연에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다음으로 투자 대비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 홍보전략 등 실질적인 방안을 구상하여 추진할 것. ○ 백세각 파리장서 기념공원을 별도로 조성할 것이 아니라 성주 출신 독립운동가를 위한 기념공원으로 심산문화테마파크 내 일원화하여 추진할 것을 건의함. ○ 공사 폐기물이 현장 내 적재되어 있으므로 적절하게 처리토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관 광 과
성주호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 성주호가 관광지로 지정됨에 따라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사업비 확보 방안, 보도교 설치 후 수면 사용료, 성주호 내 운영 중인 수상 레저시설 관리 등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 신중한 검토 후 추진해 주기 바람. ○ 지역 주민들의 요청뿐 아니라 성주호 주변에 휴게 공간이 부족하므로 보도교 주탑 전망대 내 커피숍 등의 상업시설이 설치 가능한지 검토해 주기 바람.	관 광 과

10. 17.(목) [6일차]

사업장명	내 용	소관부서
역사테마공원 내 성주읍성	○ 성주군의 랜드마크로써 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성주읍성이 지난 집중호우로 일부 구간이 유실됨에 따라 군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신 증가, 2차 붕괴 우려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우선 군민들에게 붕괴 원인, 향후 조치 계획 등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불신을 해소시키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초 설계와 시공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 전면적인 보강계획을 수립하되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주기 바람.	**관 광 과**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 센터	○ 올해 저급과 참외 수매량이 10,000여 톤으로 예년보다 증가하는 추세로 수매사업 투자 비용을 고품질 참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에 주력하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관내 한우농가에 TMR 사료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만 있다면 TMR 사료 배합 원료인 저급과 참외 활용이 증가될 것이고 그 결과 전기요금 절감 등 자원화 센터 운영에 이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농 정 과**

※ 요구자료

방문일자	사업장명	요구내용	소관부서
10. 10. (목)	일반재산 교환 예정지	①분할 관련 자료 (분할 지번, 시기, 면적 등)	재 무 과
10. 11. (금)	별의별 문화마당	①미조성 공원 내역	도시계획과
10. 14. (월)	별고을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①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제한 조건(규정) ②문화재 발굴조사 상세 추진현황 및 용역비 편성 시기 ③문화재 발굴조사 당초 용역비 산출내역 ④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설계변경 상세 사유 ⑤토지보상법 적용 근거 및 토지수용 내역 ⑥총사업비 현황 (현 체육공원과 조성 중인 종합체육시설사업)	체육시설 사 업 소
10. 15. (화)	월항파크골프장 조성사업	①토지보상법을 적용한 사유 관련 자료	체육시설 사 업 소
10. 16. (수)	성주호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①농업용수 성주호의 관광지 지정 가능 관련 자료 사본	관 광 과
10. 17. (목)	역사테마공원 내 성주읍성	①채움석(잡석) 매입(반입) 증빙 자료	관 광 과

조치결과 등 제출

○ 요구자료 제출 : 2024. 10. 24.(목)한

○ 조치결과(향후계획) 제출 : 2024. 11. 7.(목)한 *서식 별첨

별첨1)

2024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처리상황부

연번기재	사업 또는 사업장명	*가야산 탐방로(법전리 구간) 주차장 예정지*	소관부서	*환경과*
방문 결과				
처리 상황 (조치, 향후 계획 등)				
진 도	완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완 료 (예 정)	*추진 또는 검토 중인 경우 완료예정일 기재 예)2024. 12월 중*			
팀 장 (담당자)	*○○팀장 ○○○(행정전화번호)* *주 무 관 ○○○(행정전화번호)*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4. 10. 18.(금) 10:3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8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 검토보고서

〈 의 안 목 록 〉	〈 제 출 자 〉
1.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성 주 군 수】
2.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성 주 군 수】
3.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4. 성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성 주 군 수】
5.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성 주 군 수】
6.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7.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 주 군 수】
8. 성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9. 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 제안이유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성주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경상북도

나. 출연현황

(단위 : 백만원)

조성총액 ('93 ~ '27)	기 조성액 ('93 ~ '24)	목표액 ('23 ~ '27)	'25년 출연액
4,740	4,266	790	158

※ 산정기준 : 목표액('23~'27)에 따라 매년 158백만원 출연

3.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주요내용

구 분	지원한도			상환기간		비 고
	개인	법인	기타	시설	운영	
일 반	2억원	5억원	10억원 (기업투자유치 등)	3년거치 7년 균분 상환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	연리 1.0%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만39세 이하)	5억원	10억원	-	5년거치 15년 균분 상환	3년거치 5년 균분 상환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18조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나. 기타사항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성주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상대적으로 낮은 경영금리 대출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킴으로써 우리 군 농업경영의 자립 기반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1. 제안이유

2025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심의·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 만전을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소상공인 특례보증

나. 출연기관 : 경북신용보증재단

다. 출 연 금 : 500,000천원

라. 출연기간 : 2025. 1. ~ 12.

3. 기대효과

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대출로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나. 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출 가능토록 보증지원으로 경영안정과 성장발판 마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

다.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5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성주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5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여 경기침체 장기화로 매출 하락 등 원활한 자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융자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사항의 반영 및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건축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 조항 신설(안 제21조)

- 건축법에서 위임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 조항 신설

나.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 및 업무범위 정비(안 제22조제1항) : 용어의 단순화 및 명확화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을 포함한다)
-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을 포함한다)
-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을 포함한다)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 그 밖에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

다.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근거 정비(안 제22조제2항)

: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중” → “경상북도지사가 작성·관리하는 업무대행건축사 등록명부에서”로 정비

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청구방식 정비(안 제23조)

: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사회 회장이 일괄하여 대행수수료를 허가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

마.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조항 삭제(안 제25조의2)

: 건축법 개정사항 반영 →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른 건축법상 건축물의 유지·관리 조항 삭제

바.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항 삭제(안 제25조의3)

: 건축법 개정사항 반영 →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른 건축법상 건축물의 유지·관리 조항 삭제

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정비(안 제33조)

: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 “9미터” → “10미터”로 완화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건축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평가분석 : 해당없음 [가족지원과-23227(2024. 5. 9.)호]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기획예산실-5561(2024. 5. 13.)호]

마. 입법예고 : 2024. 6. 10. ~ 7. 1.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9m에서 10m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 다만, 안 제21조제3항과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제14조의3제2호에서 명시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존치 기간이 다름에 따라 사업 추진 시 도시계획과와 협조하여 원활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군민들의 편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빈집 및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등이 포함된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다.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빈집 정비 지원대상 범위와 지원 근거 규정 마련

라.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정비를 끝낸 빈집을 공공이용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농어촌정비법」

나. 예산관련사항 :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평가분석 : 해당없음[가족지원과-24875(2024. 5. 22.)]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기획예산실-5834(2024. 5. 22.)]

마. 입법예고 : 2024. 6. 12. ~ 7. 3. [허가과-28139(2024. 6. 12.)]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 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및 화재 발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빈집의 정비 방법, 운영 방향과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소유자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활용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 제안이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따라 사전에 성주군 의회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나.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1조 및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다. 출 연 금 : 5,748천원(전년 대비 △3.72%, 222천원 감소)

라. 출연금 산정기준

- 전전연도(2023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 2023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 47,903,438천원

(단위 : 천원)

'23년 결산 지방세	'23년 결산 보통세			'24년 정산액	'25년 연구원 출연금
	합계	현년도	과년도		
47,903,440	47,903,438	47,278,757	624,681	-	5,748

마. 출연목적

- 지방자치단체는「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같은 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하여야 함.

바. 출연시기 및 방법 : '25. 3월 중 현금 출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등

나. 최근 5년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출연금	25,842	4,333	3,961	5,966	5,612	5,970

다. 출연기관 현황 : 본 의안 참조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 하도록 되어 있어 매년 출연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25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년도 대비 222천원 감액된 5,748천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의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 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무인발급창구에서 발급되는 주민등록등본 등 45종 민원증명의 수수료를 감면하여 민원증명 간 수수료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변경 (안 제4조)

- 존속기한 : 2024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가족지원과-22806(2024.5.7.)]

2) 규 제 심 사 : 규제심사 대상아님[기획예산실-5293(2024.5.3.)]

3) 입 법 예 고 : 2024. 6. 11. ~ 7. 2.(21일간)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무인발급창구에서 발급되는 민원증명의 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 주민등록등본 등 45종 민원 증명의 수수료를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되는 행정적 일관성을 제고하고 민원인들의 비용부담과 불편을 경감시키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제안이유

가.「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다.「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2. 주요 사업

가. 수륜면 백운리 일반재산 처분(변경)

1) 목적

- ㈜가야호텔에 대부중인 군소유 일반재산과 ㈜가야호텔 소유 토지와 상호교환하고자 함.

2) 용도 : 수륜면 백운리 1282-27(일반재산)과 수륜면 백운리 산59-1 상호교환하여 연접한 군유재산을 집단화하여 향후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함

3) 기간 : 2024. 10. ~ 2024. 12.

4) 규모

- 취득 : 수륜면 백운리 산 59-1 임야 6,481㎡
- 처분 : 수륜면 백운리 1282-27 대지 4,451㎡

5) 기준가격명세

(단위 : ㎡ , 원)

구 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기준가격	재산관리관	비고
소계							
토지	수륜면 백운리	1282-27	대지	4,451	565,277,000	재무과	
토지	수륜면 백운리	산59-1	임야	6,481	230,723,600	㈜가야호텔	

6) 처분방법

- 상호교환

※ 교환차액은 금전으로 지급(공유재산법 제39조 제3항)

7) 조건부 가결

- 2024년 제7회 성주군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감정평가 결과, 차액이 높은 쪽 가격의 25% 이내일 때 교환을 시행한다는 조건부 가결을 받음.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 군 소유 일반재산인 수륜면 백운리 1282-27번지의 대지 4,451㎡를 ㈜가야호텔 소유의 수륜면 백운리 산 59-1번지의 임야 6,481㎡의 소유토지와 상호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취득하고자 하는 임야의 경우 군유재산과 연접해 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향후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임야를 매각하는 소유자가 교환 의사가 있을 때 상호교환하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에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제정('23. 4. 27. 시행)에 따라 상위법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자율방범활동 경비지원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자율방범활동 지도 및 감독,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9346(2024.8.8.)]

2) 성별영향평가분석 : 해당없음[가족지원과-37806(2024.8.6.)]

3) 입법예고 : 2024. 9. 2. ~ 9. 22.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상위법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자율방범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비지원 및 지원절차, 지원중단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경비의 지원 시 행정지도 및 감독에 따른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자율방범대원등의 처우를 향상시켜 지역사회 안전 확보를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현행법상의 "향토"라는 용어는 고향땅 또는 시골이라는 의미로서, 변화한 시대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며 현대 예비군의 위상이나 임무를 고려할 때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16. 11. 30. "향토"라는 표현을 삭제하도록 하여 법 제명이 "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 "예비군법"으로, "향토예비군"이 "예비군"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의 조항 및 용어를 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상위법령 및 인용된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제4조, 제5조)

나. 지역책임군부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명칭 변경(안 제3조 및 제6조)

다. 조직개편반영(안 제7조)

라. 오탈자 수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24. 7. 19. ~ 2024. 8. 9.

2)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6564(2024.6.7.)호]

3)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가족지원과-27324(2024.6.5.)호]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으로,

○ “향토”라는 용어는 변화한 시대 상황에 적절하지 않아 삭제하였으며, 군 부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함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